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3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6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윤준병 · 주철현
황명선 · 이상식 · 임미애
문대림 · 한민수 · 전종덕
김준혁 · 이수진 · 오세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유통시설의 설치·운영 등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임산물의 생산·유통정보를 지원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. 그러나 조경수는 수종·규격·수령·형태 등에 따라 거래 특성이 다양하고 생산기간이 길어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, 조경수의 생산·유통 및 가격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·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. 현행법 제7조도 임산물 전반의 유통구조 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, 조경수에 특화된 정보 조사 및 정책 조정 기능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.

이에 조경수의 생산·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·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통계·정보 기반을 구축하고, 이

를 바탕으로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,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. 또한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의 생산·유통 및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·관리·분석·제공하고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과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산물 생산·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주요내용

- 가. 임산물 생산·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(안 제7조의2제1항 신설)
- 나. 조경수 생산·유통 및 가격정보의 조사·제공 근거 마련(안 제7조의3제1항 신설)
- 다. 조경수 생산·유통 및 가격정보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(안 제7조의3제2항 신설)
- 라. 조경수 생산·유통 및 가격정보 조사 업무의 위탁(안 제7조의3제3항 신설)
- 마. 조경수 생산·유통위원회 설치·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(안 제7조의4제1항 신설)
- 바.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경수의 가격조사 및 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(안 제29조의4제4항 신설)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임산물 생산·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생산·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·관리·분석·제공하고 원활한 수급과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산물 생산·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산림청장은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산물 생산자, 유통업자, 관련 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임산물의 생산·유통 및 가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산림청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·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④ 산림청장은 시스템을 통하여 임산물의 생산·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인정보, 영업상 비밀 및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.

⑤ 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자료의 제출, 정보의 제공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3(조경수 생산·유통 및 가격 정보 제공 등) ① 산림청장은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과 시장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수 생산 및 유통·가격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② 산림청장은 조경수 생산 및 유통·가격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, 조경수 생산자·관련 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경수 생산 및 유통·가격 조사방법 및 대상, 정보제공 방법,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4(조경수생산·유통위원회 등) ① 조경수의 생산·유통 및 가격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조경수생산·유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조경수 생산·유통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

2. 조경수 생산·유통 및 가격 조사 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3. 조경수 생산·유통 및 가격 정보제공의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조경수 생산·유통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

2. 조경수 생산·유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·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

2. 임산물 생산·유통정보시스템의 운영

3. 조경수의 생산·유통 및 거래가격의 조사·분석, 가격정보 체계의 구축·운영 및 정보제공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2(임산물 생산·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</u> <u>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생산·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·관리·분석·제공하고 원활한 수급과 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산물 생산·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산림청장은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산물 생산자, 유통업자, 관련 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임산물의 생산·유통 및 가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<u>③ 산림청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·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</u>

<신 설>

있다.

④ 산림청장은 시스템을 통하여 임산물의 생산·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인정보, 영업상 비밀 및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.

⑤ 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자료의 제출, 정보의 제공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3(조경수 생산·유통 및 가격 정보 제공 등) ① 산림청장은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과 시장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수 생산 및 유통·가격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② 산림청장은 조경수 생산 및 유통·가격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, 조경수 생산자·관련 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

<신 설>

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경수 생산 및 유통·가격 조사 방법 및 대상, 정보제공 방법,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4(조경수 생산·유통위원회 등) ① 조경수의 생산·유통 및 가격정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조경수 생산·유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조경수 생산·유통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

제29조의4(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) ① ~ ③ (생략)
<신설>

2. 조경수 생산·유통 및 가격 조사 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
3. 조경수 생산·유통 및 가격 정보제공의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조경수 생산·유통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

2. 조경수 생산·유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의4(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

	<u>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u> <u>1.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</u> <u>임산물의 생산·유통 정보에</u> <u>관한 지원</u> <u>2. 임산물 생산·유통정보시스</u> <u>템의 운영</u> <u>3. 조경수의 생산·유통 및 거</u> <u>래가격의 조사·분석, 가격정</u> <u>보 체계의 구축·운영 및 정</u> <u>보제공</u>
--	---